



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

## 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41176(2021.12.16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2.31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,

○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,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,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,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, 종전 **방역강화 조치의 연장(2주)**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,

- 영화상영 및 공연시간으로 인해 이용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영화관·공연장이나, 상시 많은 인파가 몰려 시설 내 밀집도가 높은 백화점·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적용 등 일부 시설 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### 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	주요 내용
영화관 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22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</li> <li>↳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,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</li> </ul>
백화점 대형마트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접종증명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</li> <li>↳ 2022.1.10.(월)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(2022.1.10.~2022.1.16.)</li> <li>* 대규모 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(예: 하나로마트)에 한해 적용</li> </ul>
방역패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방역패스 적용 대상(연령) 확대 시기 변경</li> <li>↳ 12세 이상인 자(종전: 2022.2.1. / 변경: 2022.3.1.(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))</li> <li>※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,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</li> </ul>

3.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일부 돌아섰으나,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, 취소바랍니다.

○ 특히,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 확산 방지 등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** 판단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,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 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: 2022.1.3.(월) ~ 2022.1.16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전국 17개 시도\*

\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경과규정 등

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: 2022.1.17.(월) 05시까지 적용

② 백화점·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\*: 2022.1.10.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\* 계도기간: 2022.1.10.(월)~ 2022.1.16.(일)

③ 방역패스 적용 대상(연령) 확대\*: 2022.3.1.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\* 계도기간: 2022.3.1.(화)~ 2022.3.31.(목)

\* 적용기간,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### 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
#### ○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7종)

-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-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**상점·마트·백화점** \* 대규모 점포 및 3,000㎡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대상

#### ○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13종) 및 종교시설

-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종교시설

#### ○ 고위험 사업장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**붙임1: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**

## 2) 모임·행사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### ■(사적모임)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
\* 식당·카페 이용 시 '접종완료자 등' 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)

### ■ (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) \*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

- (1~4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

- (50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

- (300명 이상)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
↳ 단, 2021.12.16.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,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(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, 축소하여 개최 권고)

※ 접종완료자 등: 접종완료자, 완치자, PCR음성확인서 소지자, 18세 이하인 자(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(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)

※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
※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합 등) 가능

<모임·행사(예시)>

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

● (시험)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\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**붙임2: 전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**

### 3) 교통시설

○ 대상시설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### 4) 국공립시설

○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### 5)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### 6) 사업장

○ 유연근무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,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

### 7) 학교(등교)

○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·과밀학교 밀집도 2/3\*으로 조정하되,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·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

\* 초등학교(1, 2학년 포함) 밀집도 5/6, 중·고등학교 밀집도 2/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.20(월)부터 적용(학교별 탄력 적용), 유·특수·돌봄 및 소규모·농/산/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

4.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, 인·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(종)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,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.

5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○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
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3.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**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장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전국 17개 시도지사



주무관 <b>홍명기</b>	행정사무관 <b>안응식</b>	생활방역팀장 <b>권민정</b>	사회전략반장 <b>손영래</b>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<b>이기일</b>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 <b>류근혁</b>	2021. 12. 3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 <b>권덕철</b>	

협조자

시행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3432**      접수 **학생건강정책과-44**      (2022. 1. 4.)

우 30113    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    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5      팩스번호 044-202-0000      / [mk7069@korea.kr](mailto:mk7069@korea.kr)      / 비공개(5)